

제330회 임시회
2014. 6. 20.(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6. 20.(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김형근 의원 외 6인

나. 제출일자 : 2014년 6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6월 11일

-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형근 의원)

가. 제안이유

○ 남녀 공무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 삶의 질 제고와 가정을 중시하는 도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여성공무원의 여성보건휴가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함 : 제18조제2항(안)

○ 특별휴가 규정 중 양성평등을 위해 여자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변경 : 제18조제3항(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제18조제7항(안)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금번 개정조례안은 남녀 공무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 삶의 질 제고와 가정을 중시하는 도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여성공무원의 여성보건휴가를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하고(안 제18조제2항), 여성공무원으로 한정된 생후 1년간 1시간의 육아시간을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고(안 제18조제3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휴가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제7항)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2
----------	-----

발의연월일 : 2014년 6월 2일

발 의 자 : 김형근, 김희수, 심기보
김봉희, 임 현, 김영주
최미애

1. 제정이유

남녀 공무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 삶의 질 제고와 가정을 중시하는 도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여성공무원의 여성보건휴가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
함 : 제18조제2항(안)
- 나. 특별휴가 규정 중 양성평등을 위해 여자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변경 : 제18조제3항(안)
-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제18
조제7항(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여성공무원이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마다 1일간의 여성보건휴가를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여자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공무원이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 단,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p> <p>제18조(특별휴가) ① (생략)</p> <p>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마다 1일간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p> <p>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u>여자공무원</u>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④ ~ ⑥ (생략)</p> <p>⑦ <신설></p>	<p>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p> <p>제18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여성공무원이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마다 1일간의 여성보건휴가를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u></p> <p>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u>공무원</u>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④ ~ ⑥ (생략)</p> <p>⑦ <u>공무원이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 단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u></p>

관계법령 발췌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